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-85호

승인제5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56(2003.3.27)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51(2005.1.5)호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고, 종로구고시 제2004-62(2004.8.19)호 및 2005-4(2005.1.14)호로 지형도면작성 및 승인고시, 종로구고시 제2004-64(2004.9.6)호 및 동고시 제2005-20(2005.4.28)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된 승인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정된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06년 1월 6일

종로구청장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승인제5주택재개발사업

나. 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종로구 승인동 766번지일대, 14,541.30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종로구 승인동 1069번지 2층

승인제5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홍완표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04년 8월 31일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: 별첨

사. 건축계획 : 변경없음

아.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: 변경없음

자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구 분			면 적(㎡)			비고
			변경전	변경후	증감	
정비 기반 시설	용도폐지	도로	489.90	484.90	감5.00	측량성과도(1487-1번지)판독오류에 따른 단순면적정정
	새로이 설치	도로	1,739.90	1,734.90	감5.00	
		녹지	586.00	586.00	변경없음	

차. 주요변경내용

- 1) 측량성과도 판독오류에 따른 구역면적 정정 - 감5.0㎡
- 2)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및 양도 면적 변경

카. 관계도서 : 생략 【종로구청 주택과(☎731-1085)에 비치】

[정정알림]

종로구보 제772호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5-609호 (2005.12.30)로 『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』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.

☐ 정정내용

1) 도시환경정비구역

가) 정비구역지정 위치 및 면적

① 당초 : 지구명 → 변경 : 구역명,

나) 건축계획

① 당초 : 용도 → 변경 : 주용도,

② 용적률

- 당초 : 교남2구역 650%이하, 교남3구역 800%이하

- 변경 : 교남2구역 상한 650%이하, 교남3구역 상한 800%이하